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4078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4. 08. 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03. 12.



정 보 공 개 서

SEO COMPANY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1

SEO COMPANY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서로31

[본사 전화번호] 1899-986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899-986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SEO COMPANY	부바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서로31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4.05.28	김건우	1899-9869	053-253-9860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504-16-7733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해당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부바스]라 합니다) 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부바스]	-
상 호	부바스 00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3026570000 등록일자 : 2014. 10. 24.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32,166	-	-
2022	-	-	-	42,800	-	-
2023	-	-	-	67,957	-	-

*당사는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합니다. 붙임[1]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건우	대표	2001.05.01.~2007.07.30	달콤한교실 대표	경영 및 운영
			2005.11.10.~2007.11.21	제니스테이블 대표	경영 및 운영
			2009.09.25.~2012.09.15	곰작업실 대표	경영 및 운영
			2013.03.12.~현재까지	부바스 대표	경영 및 운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 당 연 도	임원수		직원수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부바스]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부바스	등록 서비스표	2014. 10. 24.	4103026570000	김건우	2024. 10. 24.

이미지



BUBBAS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시의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BUBBAS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부바스] 시작한 날 : 2014년 9월 11일

[부바스 직영점] 시작한 날 : 2013년 03월 12일

2. [부바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SEO COMPANY	부바스	김 건 우	2014.09.11.~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길 27 (삼덕동1가 4층)
SEO COMPANY	부바스	김 건 우	2014.09.11.~현재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서로31

3. [부바스]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부바스	대분류	소분류
	커피	커피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부바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당사의 최근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0	4	4	0	8	8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1	1	0	1	1	0	3	3	0
대구	1	1	0	1	1	0	3	3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1	1	0	1	1	0	1	1	0
경남	1	1	0	1	1	0	1	1	0
제주	0	0	0	0	0	0	0	0	0

4. 최근 3년간 [부바스]의 가맹점 수

(단위:개)

연 도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 말
2021	3	1	0	0	0	4
2022	4	0	0	0	0	4
2023	4	4	0	0	0	8

6. [부바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부바스]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거나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비고 (단위 천원)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	상한	면적 3.3m²	하한	면적 3.3m²	
전체	8	502,590	8,089	1,119,298	16,411	263,242	3,760	-
서울	0	-	-	-	-	-	-	-
부산	3	-	-	-	-	-	-	-
대구	3	-	-	-	-	-	-	-
인천	0	-	-	-	-	-	-	-
광주	0	-	-	-	-	-	-	-
대전	0	-	-	-	-	-	-	-
울산	0	-	-	-	-	-	-	-
세종	0	-	-	-	-	-	-	-
경기	0	-	-	-	-	-	-	-
강원	0	-	-	-	-	-	-	-

충북	0	-	-	-	-	-	-	-
충남	0	-	-	-	-	-	-	-
전북	0	-	-	-	-	-	-	-
전남	0	-	-	-	-	-	-	-
경북	1	-	-	-	-	-	-	-
경남	1	-	-	-	-	-	-	-
제주	0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를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부바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부바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	8	1,323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에 [부바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우체국	영업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20	053-757-1030
농협은행	범물지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82	053-783-661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체국 또는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서 컴퍼니]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 또는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운영하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부바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 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 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계	11,000				
가입비	5,5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한 소멸성 비용으로 영업개시 후 미 반환	오픈상담, 장소선정 지원비, 계약금 등
교육비	5,500	교육시작 7일 이전	교육개시 1일전 계약 해지 시 반환	교육개시 후 미 반환	Know-How, 매뉴얼제공, 조리방법 등 교육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현금)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계속 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합 계	13,000
가 입 비	5,500
교 육 비	5,500
(현금)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99m²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 계		140,800	4,693			
간 판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미정)	3,300		설치 시 100%	설치 전 계약취소	현장실측에 따라 금액 변동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82,500	2,75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및 기물		55,000	1,833	납품시 100%	납품전 계약취소	-
상·하수도,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전기·가스공사, 인·허가, 가구 등의 비용은 별도						

BUBBAS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BUBBAS 가맹점 사업자와의 도면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소방관련 인허가비, 실외공사, 전면·입구창호공사, 철거, 공조냉난방공사, 전기승압공사, TV, 음향장치 등)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별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BUBBAS 인테리어 공사 시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3.3m²(평)당 금 22만원(VAT 포함)의 인테리어 디자인비용을 별도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의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 정 기 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부바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을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가맹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

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이 정보공개서 [V. 9.]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로열티	가맹본부	33	매월 10일	미반환	소멸성비용	
전국단위 상품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20% 가맹점전체 80%	광고계획통지일 로부터 10일 이내	미반환	소멸성비용	광고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 협의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항목별 분담	추후협의	미반환	소멸성비용	판촉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협의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 10일 이전	교육개시전 계약해지	교육해지	교육내용에 따라 금액은 변경됨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미정)	330	설치즉시 100%	변경설치전	변경설치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보수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미정)	2,000~ 7,500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미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삼자물류로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 본사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반기별 1회	문의 : 본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계약을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

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BUBBAS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이 정보공개서[V.7]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잔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등을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은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거제거 및 반환 등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제거 및 반환 등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제거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해당 공급자에게 반품요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에 문의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부바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BUBBAS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BUBBAS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 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부바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의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가 [부바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다음의 지정된 상품류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	-----------	--------	-----

에소프레소	왼쪽에 기재된 메뉴와 본사에서 추가하는 신메뉴 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페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끼야또			
카페모카			
카라멜모카			
화이트 초콜렛 모카			
더치 커피			
녹차라떼			
홍차라떼			
다크 초콜릿 라떼			
화이트 초콜릿 라떼			
고구마 라떼			
스팀밀크			
복숭아 아이스티			
레몬차/유자차			
자몽차/녹차			
국화차			
페퍼민트			
마테차/얼그레이			
레몬에이드			
오렌지에이드			
자몽에이드			
애플저거 무에요에이드			
청포도주스/오렌지주스			
자몽주스/토마토주스			
밀크빙수			
생자몽빙수			
녹차빙수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			
망고 요거트 스무디			
딸기 요거트 스무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녹차 프라페			
민트초코 프라페			
쿠키앤크림 프라페			
커피가 막 씹혀요 프라페			

초콜렛이 막 씹혀요 프라페			
베이직 와플			
아이스크림 와플			
허니브레드			
마늘 고르곤졸라			
루꼴라 토마토			
매운 페페로니			
감자 베이컨			
마르게리따 피자			
콰트로(치즈) 피자			
루꼴라 가든 피자			
매운 디아볼라 피자			
리코타 치즈 샐러드			
생모짜렐라 & 토마토 샐러드			
자몽 & 닭가슴살 샐러드			
와일드 불고기 브래드			
매운 치킨 브래드			
자몽 레드볼			
블루모이또 레드볼			
코로나리타			
부바스 그릴 콘			
포테이토 프라이즈			
로얄밀크티			
루꼴라에이드			
청포도에이드			
바나나주스	왼쪽에 기재된 메뉴와	1회 위반: 구두 경고	
시금치바나나주스	본사에서 추가하는	2회 위반: 2회 이상	
당근토마토주스	신메뉴 외의 제품은	서면 시정요구	
샐러리청포도주스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파프리카자몽주스			
부바오즈샌드(기본,매운맛)			
키즈나뚜루아이스크림			
밀크빙수			
크림치즈빙수			
생자몽빙수			
녹차빙수			
라이크코코			
스위트B(포테이토)			
치즈나쵸			
몬테레이 치킨 나쵸			
롤 소세지&야채스틱			
바카디모히또			
블루 진 글라스			
버니리타			
부바 크림생맥주			
부바 더치생맥주			
기린 생맥주			
기린 프로즌 생맥주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코로나			
케이지비(레몬)			
버니니			
파울라너			
기네스			

엘 히마도르	왼쪽에 기재된 메뉴와 본사에서 추가하는 신메뉴 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봄베이 사파이어(375ml)			
봄베이 사파이어(750ml)			
엑스레이티드(375ml)			
엑스레이티드(750ML)			
토닉워터			

BUBBAS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및 당사의 허락 없이 레시피를 변경하여 조리·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회이상 위반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BUBBAS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BUBBAS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BUBBAS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가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에소프레소	HOT:3,500	서면통보	2015.12월 동성로점기준
아메리카노	HOT:3,500/ICE:4,000	"	"
카페라떼	HOT:4,000/ICE:4,500	"	"
카푸치노	HOT:4,000/ICE:4,500	"	"
카페 바닐라 라떼	HOT:4,300/ICE:4,800	"	"
카라멜 마끼야또	HOT:4,300/ICE:4,800	"	"
카페모카	HOT:4,500/ICE:5,000	"	"
화이트 초콜렛 모카	HOT:4,500/ICE:5,000	"	"
더치 커피	ICE:5,000	"	"
녹차라떼	HOT:5,000/ICE:6,000	"	"
다크 초콜릿 라떼	HOT:5,000/ICE:6,000	"	"

화이트 초콜릿 라떼	HOT:5,000/ICE:6,000	"	"
고구마 라떼	HOT:5,000/ICE:6,000	"	"
스팀밀크	HOT:4,000	"	"
복숭아 아이스티	ICE:4,500	"	"
레몬차/유자차	HOT:4,500/ICE:4,500	"	"
자몽차/녹차	HOT:4,500/ICE:4,500	"	"
국화차	HOT:4,500/ICE:4,500	"	"
페퍼민트	HOT:4,500/ICE:4,500	"	"
마테차/얼그레이	HOT:4,500/ICE:4,500	"	"
레몬에이드	ICE:5,500	"	"
오렌지에이드	ICE:5,500	"	"
자몽에이드	ICE:5,500	"	"
애플 자몽 워터	ICE:5,500	"	"
청포도쥬스/오렌지쥬스	ICE:6,000	"	"
자몽쥬스/토마토쥬스	ICE:6,000	"	"
밀크빙수	ICE:7,500	"	"
생자몽빙수	ICE:8,000	"	"
녹차빙수	ICE:10,000	"	"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	6,000	"	"
망고 요거트 스무디	6,000	"	"
딸기 요거트 스무디	6,000	"	"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6,000	"	"
녹차 프라페	6,000	"	"
민트초코 프라페	6,000	"	"
쿠키앤크림 프라페	6,000	"	"
커피가 막 씹혀요 프라페	6,000	"	"
초콜렛이 막 씹혀요 프라페	6,000	"	"
베이직 와플	5,000	"	"
아이스크림 와플	6,000	"	"
허니브레드	6,500	"	"
마늘 고르곤졸라	6,500	"	"
루꼴라 토마토	6,500	"	"
매운 페페로니	6,500	"	"
감자 베이컨	6,500	"	"
마르게리타 피자	1~2인용:8,900	"	"
카트로(치즈) 피자	1~2인용:9,900/2~3인용:16,900	"	"
루꼴라 가든 피자	1~2인용:8,900/2~3인용:15,900	"	"
매운 디아볼라 피자	1~2인용:8,900/2~3인용:15,900	"	"
리코타 치즈 샐러드	12,900	"	"
생모짜렐라 & 토마토 샐러드	12,900	"	"
자몽 & 닭가슴살 샐러드	12,900	"	"
와일드 불고기 브래드	9,900	"	"
매운 치킨 브래드	8,900	"	"
자몽 레드볼	9,000	"	"
블루모히또 레드볼	9,000	"	"
모히또 스미노프	8,000	"	"
코로나리따	12,000	"	"
부바스 그릴 콘	4,000	"	"
포테이토 프라이즈	6,500	"	"

로알밀크티	HOT:5,000/ICE:6,000	"	"
루꼴라에이드	5,500	"	"
청포도에이드	6,000	"	"
바나나주스	6,000	"	"
시금치바나나주스	7,000	"	"
당근토마토주스	7,000	"	"
샐러리청포도주스	7,000	"	"
파프리카자몽주스	7,000	"	"
부바오즈샌드(기본,매운맛)	4,900	"	"
키즈나뽀루아이스크림	3,000	"	"
밀크빙수	7,500	"	"
크림치즈빙수	7,500	"	"
생자몽빙수	8,000	"	"
녹차빙수	10,000	"	"
라이크코코	12,000	"	"
스위트B(포테이토)	6,500	"	"
치즈나초	8,000	"	"
몬테레이 치킨 나초	9,000	"	"
롤 소세지&야채스틱	9,000	"	"
바카디모히또	9,000	"	"
블루 진 글라스	9,000	"	"
버니니리타	12,000	"	"
부바 크림생맥주	4,000	"	"
부바 더치생맥주	5,000	"	"
기린 생맥주	8,000	"	"
기린 프로즌 생맥주	8,000	"	"
버드와이저	5,000	"	"
하이네켄	6,000	"	"
코로나	6,000	"	"
케이지비(레몬)	6,000	"	"
버니니	7,000	"	"
파울라너	7,000	"	"
기네스	8,000	"	"
엘 히마도르	69,000	"	"
붐베이 사파이어(375ml)	36,000	"	"
붐베이 사파이어(750ml)	69,000	"	"
엑스레이티드(375ml)	46,000	"	"
엑스레이티드(750ML)	79,000	"	"
토닉워터	2,500	"	"
데스페라도스	7,000	"	"
칠리오즈샌드	5,900	"	"
모듬소세지	15,900	"	"
쿠바노피자	1~2인용:8,900	"	"
에그베네딕트	9,900	"	"
크림치킨리조또	9,900	"	"
바베큐치킨리조또	9,900	"	"

BUBBAS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전문점	부바스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휴게소,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및 활성화상권(홍대입구, 명동, 이태원, 부산 서면 및 해운대, 대구 동성로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부바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없음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부바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자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39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에 지급할 공급품 대금 및 기타 채무의 미지급금이 거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41조 1항
○ 기업로고나 브랜드 로고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당사의 상호, 당사가 사용할 것을 공지한 상호, 당사가 사용하였던 상호를 당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41조 1항
○ 당사가 당사와 을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 로고 및 브랜드로고를 변경·폐지하였을 때, 기존의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41조 1항
○ 위생적이고 청결한 점포를 위해 인테리어·설비의 내구연한 만료시점에,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필요성 판단 시 이전 또는 이후에 점포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동의 없이 월간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경우	41조 1항
○ 매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수퍼바이저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1조 1항
○ 브랜드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가맹점 위생과 제품 품질의 표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41조 1항
○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와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법령의 허용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거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행하는 경우	41조 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1조 1항
○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공통제품 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전용하는 경우	41조 1항
○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41조 1항
○ 로열티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매출관리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 받은 경우	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 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41조 1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할 위해 만든 레시피(조리방법 등)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41조 1항
○ [부바스]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바스]의 타가맹점과 [부바스]의 경쟁사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41조 1항
○ 기타 가맹계약 시에 협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1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품질관리기준은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브랜드의 이미지와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40조 2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에 대한 고시 등이 있는 경우	
○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재조정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계약서(안)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에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 고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약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문의: 본사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 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승인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20일가량소요) ->승인여부 통지 ->가맹본부의상속에 의한 사업자변경계약 체결 ->가맹점운영권 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
업무위탁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귀하가 [부바스]와 동종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절차	비 고
커피 및 음료, 베이커리를 판매 및 배달하는 업종 및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종료 및 해지, 해제 후 2년 동안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문의: 본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부바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1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영업	문의: 본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여부	대체가능인력	비 고
영업규모에 따라 다름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본사 슈퍼바이저	-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본사 슈퍼바이저	-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본사 슈퍼바이저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공정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부바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상품, 브랜드, 가맹점모집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20%	80% 전체가맹점이 균분함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순수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 부담 상품할인 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획, 제작비용 이외는 협의			

B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월의 참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균분하여 산정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B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B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하며, 70% 미만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B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B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B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B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자점매입의 금지)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영업의 표준화 및 판매가격)를 위반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부바스'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금이십만원(₩200,000)씩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38조(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당사에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오십만원(₩ 5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벌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도록 합니다.
-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가맹점사업자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45일 내외	30,1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5일 내외소요	비용 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비용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선택사항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3,700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9(1일)	없음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 (3일)	없음
간판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99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8,47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 (20일)	8,470
주방집기류, 기자재등 입고	- 주방집기, 기자재 입고	D-4	8,250
POS	- POS 입고	D-2	없음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0~4 (16일)	가맹금 예치시 지급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잔여금액

BUBBAS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여 분담 (비용이과다하 게 발생할 경우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부바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부바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및 경영이론 조리 매뉴얼 및 현장 OJT, POS사용	이론교육 실습교육	영업개시 20일전	필수교육
수시교육	신메뉴 출시 조리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부바스] 가맹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 교육	10일	5,500	오픈시 현장교육 포함
정기.보수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상황에 따라 다름	매년 또는 관리자 요구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인원 추가에 따른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1조에 따라 협의 후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수료하여야 하며 신규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음식의 조리 및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899-986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붙임2 :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